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2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고, 각급 공립학교를 의무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 누적회차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1)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사.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u><신 설></u>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u><신 설></u>	6. 다음 각 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마. 「<u>한국은행법</u>」에 따른 <u>한국은행</u> 바. 「<u>상공회의소법</u>」에 따른 <u>대한상공회의소</u> 사. 「<u>방송법</u>」에 따른 <u>한국</u> <u>방송공사</u> 아. 「<u>한국교육방송공사법</u>」 <u>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교육팀	
연 락 처	(044) 201 - 6529